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62호

재검토기한 도래(2016. 6. 16.)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)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04일

해양수산부장관

1. 개정이유

재검토기한 도래(2016. 6. 16.)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)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검토기한 재설정(안 제6조 신설)

부칙의 재검토기한을 본문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재검토기한을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설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해양수산부고시 제 호

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재검토기한)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<제2017-000호, 2017.00.00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